

의안번호	2219517
의 퇴 인	송재봉 의원
회 답 일	2026. 9. 30.
추 계 번호	26A3087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성과공유제 적용대상이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5억원(연평균 3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안 제8조제1항)	300	300	300	300	300	1,500	3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제1항(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 정부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원가절감 등 합의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계약 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제1항) * 성과공유제의 적용대상 확대 - (현행)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중견기업 포함) 간의 수탁·위탁거래 - (개정안)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간의 거래관계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조제1항(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의 부칙과 개정안과 관련한 예산이 중소기업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성과공유제의 적용대상이 현행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중견기업 포함) 간의 수탁·위탁거래¹⁾에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간의 거래관계로 확대되어 성과공유 확인제의 등록·확인 대상 과제가 증가할 경우, 성과공유 확인제의 운영·관리비가 증가하여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등”이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①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의 범위에는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정부는 성과공유 확인제²⁾를 통해 성과공유제를 도입·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된 기업에 대해 평가우대 등의 인센티브와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참고자료] 성과공유제 참여 인센티브 및 성과공유제 과제 등록·참여기관 현황

□ 비용추계의 대상은 성과공유제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관리비 추가재정소요로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근거하여 추계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³⁾ 등에 따라 성과공유제 적용대상을 기존 제조업 중심 수·위탁거래에서 플랫폼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에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관리 예산 3억원을 증액 편성함

- －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구축」⁴⁾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동반성장문화조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조성, 민간·공공분야 동반성장 평가, 성과공유 확산 및 포상제도 운영 지원을 추진 중이며,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 확인제 제도 운영·관리에 2026년 예산 7억원, 2027년 예산안 10억원을 편성함

□ 성과공유제 적용대상 확대를 반영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관리 관련 202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에 3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028년 이후 재정소요는 2027년도 예산안의 증액 규모인 3억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실제 재정소요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7년도 예산이 예산안과 다르게 의결되거나 향후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 규모 및 관련 예산 편성 규모 등에 따라 추계액과 달라질 수 있음

2) 성과공유 확인제는 “과제등록→확인”의 2단계 절차로 운영됨. 과제 등록 단계는 과제계약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과제목표, 공동노력 내용, 성과공유 방식, 성과측정 기준 등을 확인하며, 과제수행 완료 후 목표 달성 여부와 성과공유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성과확인 절차를 진행함(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사업·정책 평가」)

3) 관계부처 합동, 2026, 「2026년 경제성장전략」

4) 코드: 일반회계, 4231-301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안 제8조제1항)	300	300	300	300	300	1,500	3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주계세제총괄과	손희정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손희정	02-6788-3750	hjson87@assembly.go.kr

[참고자료] 성과공유제 참여 인센티브 및 성과공유제 과제 등록참여기관 현황

<성과공유제 참여 인센티브>

구분	주요내용
평가우대	- 성과공유제 등록 및 확인 과제에 대한 동반성장 평가 우대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동반성장 종합평가 반영(최대 3점) (공공기관)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반영(최대 3점)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최대 0.4점) - 건설업 상호협력평가에 대한 평가 우대 -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협력업자당 각 1점), (대기업) 최대 10점, (중소기업) 최대 5점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1121호)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인도 심사 가점(1점)(조달청 고시 제2026-29호)
수의계약	-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이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그 성과를 확인받은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6호,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제4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2항제3호
우선구매	- 성과공유 과제 확인을 받은 개발품 등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선정 (공공부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호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정부포상	- 성과공유제 우수기업 대상 중기부 장관 표창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세제혜택	- 상생협력기금의 사용용도에 따른 상생협력기금 상의 세제혜택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이익공유금액을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에 출연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법인세법 제24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특례 가중치 3배 적용(조특법 제100조의3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공유제 과제 등록·참여기관 현황>

(단위: 개사, 누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등록기업	539	576	598	615	630
대기업	111	116	118	121	129
중소·중견기업	185	200	208	210	210
공공기관	243	260	272	284	291
참여수탁기업	12,833	15,152	17,545	19,647	21,99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사업·정책 평가」, 74p